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072
----------	-------

발의연월일 : 2025. 9. 17.

발 의 자 : 신동욱 · 조배숙 · 최수진
유용원 · 주진우 · 구자근
박준태 · 안상훈 · 강대식
박상웅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검사제도는 고위공직자 및 권력형 비리 등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설치되는 한시적 독립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 「국회법」은 특별검사를 국회의 출석·보고 및 서류 제출 요구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국회의 정당한 통제와 감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개별 특별검사법이 동시다발적으로 운영되면서 특검의 예산 집행과 무분별한 수사 운영을 둘러싼 국민적 관심과 논란이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점검·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 민주적 통제의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특별검사 사무를 추가하고, 특별검사를 국회의 출석·보고 및 서류 제출 요구 대상에 명시하여 국

회가 특검 운영을 직접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2호, 제121조 5항 및 제128조 1항 개정).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사목 및 아목을 각각 아목 및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특별검사 사무에 관한 사항

제121조제5항 전단 중 “감사원장”을 “감사원장, 특별검사”로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행정기관”을 “행정기관, 특별검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법제사법위원회 가. ~ 바. (생 략) <u><신 설></u> <u>사. · 아.</u> (생 략) 3. ~ 17. (생 략) ② (생 략)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바. (현행과 같음) <u>사. 특별검사 사무에 관한 사항</u> <u>아. · 자.</u> (현행 사목 및 아목과 같음) 3. ~ 1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① ~ ④ (생 략) ⑤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u>감사원장</u>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u>감사원장, 특별검사</u> ----- -----. ----- -----.
제128조(보고 · 서류 등의 제출 요구) ① 본회의, 위원회 또는	제128조(보고 · 서류 등의 제출 요구) ① -----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정부, <u>행정기관</u> 등에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 ----- ----- ----- ----- ----- -----<u>행정기관, 특별검사</u>----- -----. ----- ----- ----- ----- -----. ② ~ ⑥ (현행과 같음)
--	--